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의정부지방검찰청<br>전문공보관 노만석<br>전화 031-820-4460 | 보 도 자 료<br>2021. 2. 18.(목) |
|---|---|

| 제 목 | 생후 3개월 딸을 15시간 가량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유아 자녀들을 유기 · 방임한 친부에 대하여 친권상실 선고 |
|---|---|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○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(부장검사 박대범)는 2021. 2. 생후 3개월 된 친자를 15시간 가량 방치하여 질식으로26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유아인 자녀들을 수시로 유기·방임한 친부에 대하여 친권상실이 선고되게 함

- 더불어, 생존 자녀에 대하여 미술치료, 심리상담, 의료비 지급 등 지원함

○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아동학대·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속하는 한편,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편입 등을 위하여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

## 1 사건 개요

○ 피청구인 : A (무직)

○ 청구원인사실 요지

- '19. 4. 친딸인 망 B (당시 3개월)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려 재운 뒤 외출하는 등으로 다음 날 오전까지 15시간 동안 방치하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,

- 친아들 C (당시 1세)를 집에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식사, 의복 제공 등의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

## 2 심판 진행 경과

○ ‘20. 1.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(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, 민법 제924조)

- 친아들 C의 친권자인 피청구인이 아동학대,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친권상실 청구

> 아동복지법 제18조(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) 제1항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,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.
>
> 민법 제924조(친권상실의 선고)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.

○ ‘20. 7. 법원의 면접·출장조사 기일 진행

※ 피청구인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 사건은 ‘19. 10. 구속기소되어, ’20. 9. 징역 4년 확정

※ 피청구인의 처로서, 본건 자녀들의 친모는 형사재판 중 사망

○ ’21. 2 심문기일 진행

※ 검사 직접 심문기일 출석하여 친권상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진술

○ ’21. 2. 친권상실 선고

※ 친아들 C에 대한 후견인으로, C가 생활 중인 아동보호센터 원장 지정

## 3 의의 및 향후 계획

○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적극 청구, 인용케 한 사례

○ 앞으로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엄벌은 물론,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,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권상실청구 등 피해자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

※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에 대한 미술치료, 심리상담, 의료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였음